



**Q 제628조의2**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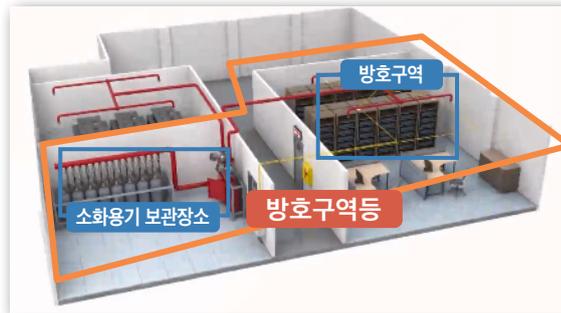
**A**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.

※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등 내 출입 시 조치사항, 점검, 유지·보수 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(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) [☞ 첨부](#)

**Q 제628조의2** 신설 규정의 ‘방호구역등’은 방호구역과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건가요?

**A** 네 맞습니다. 신설 규정에서는 적용대상을 방호구역\*과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포함한 ‘방호구역등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\* 소방감지 설비로 화재를 감시하여 화재발생 시 소화설비를 작동시켜 불을 끄도록 설정한 구역



**Q 제2호** 방호구역등의 출입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, 적절한 설치·운영방법은 무엇인가요?

**A** CCTV는 방호구역등의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하는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. CCTV 영상 저장기간(최소 1개월 권장), 설치 수량 등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Q 제3호 가목** ‘적정공기’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?

**A**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공기상태를 의미합니다. 특히 방호구역 내에서는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산소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,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의 ‘적정공기’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 「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3호」 “적정공기”란 산소농도 18% 이상 23.5% 미만, 탄산가스 농도 1.5% 미만,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,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의미함

**Q 제3호 다목**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?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?

**A** 해당 교육의 필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, 채용 시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해도 무방하므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·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교육일시, 참석자,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·보관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관리할 것

**Q 제3호 마목**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, 배관 등에 관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
**A**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일정,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, 작업방법,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제3항 마목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 전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

**Q 제6호** 개정 법령의 '이동거리'는 어떤 기준인가요?

**A**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제6호의 '이동거리'는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.

**Q 제2호**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나요?

**A** 개정 규칙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의 면적, 설비 운영 상태를 고려해 소화약제가 누출되더라도 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. 이때 측정대상 가스의 특성과 제조사의 권장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설치해야 함(2024.10.18.)

**Q 제6호** 감지 및 경보장치 중 한가지만 설치해도 되나요?

**A** 안 됩니다.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감지기와 경보장치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.

